코로나와 가처분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져 방역 전문가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오비이락인지 지난 1월 26일, 최초로 국내에서 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되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트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보수단체가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허가를 해주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니 법원이 방역을 망치고 있다는 일부의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소위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가 아닌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시국에서 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방역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quarantine은 격리를 의미한다. 감염병에 대한 뾰족한 대처방법이 없었던 과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었던 미증유의 코로나 시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감염의 전파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도시 전체를 lock down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들 나라 국민의 인권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다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1~2개월이 아니라 2년 이상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문 닫은 점포는 늘어나고 가계의 빚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때 일부 국민들의 백신 미접종, 방역보다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결정을 내려 더욱 혼란스럽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여러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들이 협의를 통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

을까. 이러한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경청할 만은 하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형사사건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양형인자를 개발하여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명제가 더 크기 때문에 향후 제기될 방역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방역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소망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권 대표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kklee@lkpartner.co.kr